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적용하며 5급 공무원 및 군무원은 법령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나, 임명장 수여권자가 상이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국새규정 동시 개정을 통하여 군무원의 사기진작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나. 군무원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현행 법령상 4급 이상 임용(승진) 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직인과 국새 날인(안 제46조의3 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4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 6개월”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9급”을 “7급, 8급, 9급”으로, “6개월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의3제3항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항까지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 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 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5급 일반군무원: <u>4년</u> 이상	2. ----- <u>3년</u> ---
3. 6급 일반군무원: <u>3년 6개월</u> 이상	3. ----- <u>2년</u> ----- --
4. 7급 및 8급 일반군무원: <u>2년</u> <u>이상</u>	<u><삭 제></u>
5. <u>9급</u> 일반군무원: 1년 <u>6개월</u> <u>이상</u>	4. <u>7급, 8급, 9급</u> ----- -- <u>이상</u>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① · ② (생 략)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 무원 중 <u>4급</u>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 를 날인한다.	③ ----- ----- ----- ----- ----- <u>5급</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288